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43 취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1. 5. 6.

판 결 선 고 2021.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0,867,8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643,0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14,400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7. 5. 16. C으로부터 B의 발행주식 5,400주를 추가로 매수하였고, 이로써 B의 총 발행주식 중 66%에 해당하는 19,800주를 보유하게 되어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B은 2011. 12. 2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redacted]시 E 지상의 F아파트 3개동 284세대를 매수하여 2012. 1. 13.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과점주주 지위를 취득할 당시 B은 위 F아파트 중 6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되, 문맥에 따라 위 64세대 전부 또는 각각의 세대를 지칭하기로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9. 7. 15.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구분	본세	가산세	합계
취득세	72,952,570원	27,915,290원	100,867,860원
농어촌특별세	7,295,250원	1,347,790원	8,643,040원
합계	80,247,820원	29,263,080원	109,510,900원

라. 원고는 2019. 7.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31.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2020. 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아파트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원고가 과점주주 지위를 취득할 당시 이미 임차인들이 우선 분양전환권을 행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을 분양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B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B은 대출금, 체납세금, 임대차보증금 등 각종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가 과점주주 지위를 취득할 당시 그 금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장부가액을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장부가액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고, 원고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B 주식에 부과된 여러 명목의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B의 주식 5,400주를 새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데, 피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전체 주식 19,800주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 시행령 조항에 따른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반된다(이하 이 항에서의 주장을 합하여 '제3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redacted]시 E 지상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F 아파트 3개동 284세대를 신축하여 2003. 4.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에 앞서 2002. 6. 3. [redacted]시 거주자를 상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선정된 입주자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D은 2008. 4. 4.경 임대의무기간(5년)이 경과하자 [redacted]시장에게 F아파트를 우선 공급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 2009. 9. 15. [redacted]시장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다.

③ B은 2011. 12. 27. D과 사이에 F아파트 3개동 284세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13.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D의 임대사업자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④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2012. 4. 18. B을 상대로 우선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redacted]지방법원 [redacted]지원 2012가합862호).

⑤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7. 9. 28. 임차인들의 청구 중 ㉠ 우선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B과 임차인들 사이에 아직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 우선 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들의 매수 청약에 대하여 B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임차인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redacted]고등법원(전주) 2013나1773호]. 위 항소심 판결은 2020. 10. 15.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 이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났고, [redacted]시장으로부터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 중 구 임대주택법(2013. 12. 14. 법률 제14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의 요건을 갖춘 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위 임차인들과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까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만, B은 구 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신청할 경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4. 7. 16. 국토교통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별표 1]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이를 매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B은 임차인들의 분양전환 신청에 따라 위 기준을 근거로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을 분양대금으로 정한 임차인들의 매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제7조 제2항). 여기에서 사실상 취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180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과점주주 지위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B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B은 2012. 1. 13.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때부터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2017. 5. 16.경까지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B은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신청하고 우선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였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 해당 임차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③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나1773호 사건에서 2017. 9. 28. 우선 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들의 매수 청약에 대하여 B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임차인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항소심 판결은 2020. 10. 15.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 지위를 취득할 당시인 2017. 5. 16.경 위 임차인들과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B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하였다거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함으로써 그와 동일시할 정도가 되어야 할 터인데, 원고가 과점주주 지위를 취득할 당시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B의 소유권이 임차인들의 우선 분양전환권으로 일부 제한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가 B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원고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은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위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을 해당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 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03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해당 법인의 자산 그 자체이고, 해당 법인이 그 자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닌 점, ② 피고는 위 1)항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피고가 B의 채무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법적 근거는 찾을 수 없는 점, ③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 당시 과세물건이 담보로 제공되는 등의 사정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를 공제하는 규정은 없는데, 과점주주의 경우에만 특별히 그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법인의 채무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제2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제3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조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 과점주주가 되는 때 또는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때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시점에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B에게 부과된 취득세와 원고가 B의 과점주주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그 취지, 법적 근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을 달리하는 점, 원고가 B의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취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점, 설령 원고가 B의 주식 취득 과정에서 다른 명목의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주취득세와는 과세 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그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을 기준으로 당시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주식 또는 지분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제1항),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며(제2항), 과점주주이었다가 주식의 양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주주가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3항), 이는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의 유형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이나 그 취득으로 간주되는 대상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률에서 정하여야 할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창설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확장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